#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 6. 1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1. 회부경위

개정안은 2022.6.3.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6.3.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임(의안번호 : 2750호).

## 2. 제안이유

2021년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급식경비 신청 방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급식경비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신청에 관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안 제6조)

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 「유아교육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4.29~2022. 5.19)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

○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을 현행 12개 조문에서 16개 조문으로 하되,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하고 급식경비 신청 방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나.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6조는 학교급식 지원신청을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원신청에 관하여 합의된 별도의 방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다. 종합 의견

○ 학교급식의 지원신청 방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 【관 계 법 령】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가. (생 략)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 2) (생 략)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 5) (생 략)
다. ~ 마. (생 략)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생 략)
나. (생 략)

3. 수산물
가. (생 략)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 라. (생 략)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 8) (생 략)
나. ~ 라. (생 략)

5. (생 략)

##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